교육목적 저작물이용 지침

본 지침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함에 그 의의가 있다

1. 목적 및 성격

1) 본 지침은 학교,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이용을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활용을 명시하며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상호이해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권리자(권리단체 등)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기관·단체 및 교육지원기관 등의 의견을 집약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다.

2) 본 지침은「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동 지침에 근거한 저작물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자 또는 권리자단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지침 재검토 또는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과용도서의 범의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가 해당되며 교과서와 지도서가 있음
   -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단, 일반서적으로 발간된 후 채택된 인정도서가 시중판매 되는 경우는 제외.
   -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와 학습지원기능 등을 부가하여 제작한 디지털교과서도 포함.
2)「유아교육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가 있음

3. 교육기관 및 수업의 범위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 : 학력인정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학력인정 남일 초·중·고등학교 등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직업훈련기관 :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경기도 기술학교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교육기관 : 서울정진학교, 부산배화학교 등
   - 다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한정됨.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중앙 및 지방공무원연수원, 각 시도 교육연수원 등

2)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서의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정 및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초중등교육법상의 교과수업 및 학교장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이에 해당됨

나.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그 학교의 장의 관리·감독하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업

다. 수업은 전일제 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이나 학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야간수업, 계절제 수업, 시간제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다.

5. 교육지원기관 및 수업지원 목적의 범위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 구성원이 공무원법상 공무원이어야 하며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이 이에 해당됨

2)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교육지원기관에서 시행하며 학생들의 학력을 보충하고 심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특정수업을 지원.

나. 교원(수업을 실제 담당하는 교사, 강사 등을 말한다.) 또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업지원

4.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목적 또는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분의 이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한다.

구 분	이용 요건
이용대상 저작물	▪ 공연,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저작물
이용주체	▪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학부모,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
이용방법	▪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전시에 의한 이용
이용시간	▪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며 담당과목이나 학교가 다른 교원들 간 저작물 공유는 제외 ▪ 수업 전후, 예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이용장소	▪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
일부분 판단 기준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
허용되지 않는 이용 (이용허락 대상요건)	▪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 교원에 의해 매학기 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부,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 ▪ 판매되는 음원·영상 저작물을 시디롬(CD-ROM),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
저작인격권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표시	▪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수록매체(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기타	▪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저작물(불법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음

5. 보상금 지급

1)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제2항에 의거 수업 및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25조 4항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보상금 수령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4항 단서에 의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보상금 지급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음원 형태의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30초로 제한
나. 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1분으로 제한
다. 만료저작물, 공유저작물, 기증저작물, 보상금 청구를 포기한 저작권자의 저작물

3) 보상금 납부 주체는 저작물 명칭, 저작권자, 출처, 이용량 등 저작물 이용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상금 수령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6. 시험문제의 복제, 배포 및 전송

1) 수업목적
가. 학교는 수업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를 소속된 교원과 학생에게 복제, 배포, 전송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

나. 교육기관은 수업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를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

2) 수업지원목적
가.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를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기술적 보호조치

학교,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이 그 수업 및 지원 목적상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